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의 종류 및 기준 확대에 따라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를 정하여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재심사받으려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장애등록 기준과 정도를 안내하고자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20. ~ 3. 2.)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나목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)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안구운동장애(복시)가 있는 사람

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정신장애인

가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1) 조현병, 조현정동장애,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망상, 환각, 기괴한 행동 등 양성증상이 있거나 사회적 위축과 퇴행 등 음성 증상이 있는 사람

2) 양극성 정동장애, 조현정동장애,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분, 의욕,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사람

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1) 조현병, 조현정동장애, 양극성 정동장애, 재발성 우울장애,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정신장애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경미

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

2) 치료불응성인 강박장애, 뚜렛장애, 기면증으로 사회적,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

별표 1 제1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- 1)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
- 2)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
- 3)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,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 및 그에 따른 장애진단, 장애정도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3. 시각장애인 가. (생략) 나. 1)~4) (생략) <신설> 8. 정신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) 가.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, 환청,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,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. 양극성 정동장애(情動障礙,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)에 따른 기분·의욕·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,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.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·의욕·행	3. 시각장애인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1)~4) (현행과 같음) 5) <u>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안구운동장애(복시)가 있는 사람</u> 8. <u>정신장애인</u> 가.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 1) <u>조현병, 조현정동장애,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망상, 환각, 기괴한 행동 등 양성증상이 있거나 사회적 위축과 퇴행 등 음성 증상이 있는 사람</u> 2) <u>양극성 정동장애, 조현정동장애,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분, 의욕,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사람</u>

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. 조현정동장애(調絃情動障礙)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	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) <u>조현병, 조현정동장애, 양극성 정동장애, 재발성 우울장애,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정신장애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</u> 2) <u>치료불응성인 강박장애, 뚜렛장애, 기면증으로 사회적,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</u>
13. 안면장애인 가. 1)~2) (생략)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) <u>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</u> <u><신 설></u> 2) <u>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</u>	13. 안면장애인 가. 1)~2) (현행과 같음) 나.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) <u>(현행 제2호와 같음)</u> 2) <u>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</u> 3) <u>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</u>